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및 시행(안 제4조~제6조)
- 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정책연구(안 제8조)
- 비용 지원 및 협력, 홍보(안 제9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일부개정(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을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발전이 구현 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특화지역(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한편,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 청년 인구 수는 여섯 번째로 많아 청년층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
-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등포구는 2025년 1월 1일자로 구 전략사업의 총괄 추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도시국을 신설하였으며, 그 하부 조직으로 ‘청년 지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설치하여 영등포구의 성장 발전의 핵심 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주력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과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서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등포구 청년 정책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기본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청년 및 청년정책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제1항에 따라 별다른 문 제점은 없어 보임.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한

조항으로, 해당 기본계획이 청년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 계획’에 안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본 조례안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간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는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합리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정책연구 등)는 영등포구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함께 규정함.
- 안 제9조(비용 등 지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기 제정배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의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 등 제도적 실행 기반도 체계적으로 갖추었으며, 상위법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였음.
- 또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의 제정 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유승용, 최인순, 남완현

정선회 의원 (4인)

1. 제안이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및 시행(안 제4조~제6조)
- 라. 위원회 설치(안 제7조)
- 마. 정책연구(안 제8조)
- 바. 비용 지원 및 협력, 홍보(안 제9조~제11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모든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